박형준 / 2월 / 기초 G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35187	18.2	11	0	0	29.2	1	0.64%	6	157
535171	15.3	9.6	0	0	24.9	2	1.27%	4	
535150	14.3	10.4	0	0	24.7	3	1.91%	4	
535345	14.3	9.1	0	0	23.4	4	2.55%	6	
535080	14.8	8.1	0	0	22.9	5	3.18%	4	
536036	13.3	8.6	0	0	21.9	6	3.82%	4	
535865	14.8	6.7	0	0	21.5	7	4.46%	5	
535258	16.1	5	0	0	21.1	8	5.10%	3	
535579	13.3	7.7	0	0	21	9	5.73%	4	
535461	14.7	6	0	0	20.7	10	6.37%	4	
536238	13.3	7.2	0	0	20.5	11	7.01%	5	
535253	14.1	6	0	0	20.1	12	7.64%	3	
535497	13.8	6	0	0	19.8	13	8.28%	5	
535224	14.2	5.5	0	0	19.7	14	8.92%	4	
535211	14.3	5.2	0	0	19.5	15	9.55%	4	
536483	13	6.5	0	0	19.5	15	9.55%	6	
535412	12.8	6.5	0	0	19.3	17	10.83%	4	
536025	12.8	6.4	0	0	19.2	18	11.46%	4	
535504	11.8	7.2	0	0	19	19	12.10%	5	
222222	12	6.9	0	0	18.9	20	12.74%	4	
535192	10.3	8.4	0	0	18.7	21	13.38%	3	
536071	12.8	5.7	0	0	18.5	22	14.01%	5	
535648	12.5	5.9	0	0	18.4	23	14.65%	5	
535487	10.8	7.5	0	0	18.3	24	15.29%	5	
535247	12.8	5.2	0	0	18	25	15.92%	5	
535820	12	6	0	0	18	25	15.92%	4	
536010	12.2	5.7	0	0	17.9	27	17.20%	6	
536051	11.4	6.5	0	0	17.9	27	17.20%	4	
535364	13.8	4	0	0	17.8	29	18.47%	4	
535496	10.8	7	0	0	17.8	29	18.47%	5	
536395	11.1	6.7	0	0	17.8	29	18.47%	4	
535140	10.8	6.7	0	0	17.5	32	20.38%	5	
535257	11.8	5.7	0	0	17.5	32	20.38%	5	
535473	11.3	6.2	0	0	17.5	32	20.38%	5	
535505	12.3	5.2	0	0	17.5	32	20.38%	4	
535511	11.3	6.2	0	0	17.5	32	20.38%	5	
535617	11.8	5.5	0	0	17.3	37	23.57%	5	
534609	12.2	4.7	0	0	16.9	38	24.20%	4	
535155	11.8	5	0	0	16.8	39	24.84%	4	
536185	13.8	3	0	0	16.8	39	24.84%	4	
535179	10.2	6.5	0	0	16.7	41	26.11%	5	
534515	11.1	5.5	0	0	16.6	42	26.75%	4	
535369	10.8	5.7	0	0	16.5	43	27.39%	6	
535926	12.3	4.2	0	0	16.5	43	27.39%	4	
535335	11.7	4.7	0	0	16.4	45	28.66%	5	
535539	10.7	5.7	0	0	16.4	45	28.66%	4	
535256	13.3	3	0	0	16.3	47	29.94%	6	
535321	10.8	5.5	0	0	16.3	47	29.94%	6	
536062	12.6	3.7	0	0	16.3	47	29.94%	6	
535310	11.2	5	0	0	16.2	50	31.85%	5	
535586	12.2	4	0	0	16.2	50	31.85%	5	
535882	12.1	3.7	0	0	15.8	52	33.12%	5	
535596	9.1	6.7	0	0	15.8	52	33.12%	4	
535873	9.8	5.9	0	0	15.7	54	34.39%	4	
535217	9.7	6	0	0	15.7	55	35.03%	5	
535262	12.2	3.5	0	0	15.7	55	35.03%	4	
536181	11.2	4.5	0	0	15.7	55	35.03%	4	
535732	14.7	1	0	0	15.7	55	35.03%	3	
111111	9.8	5.7	0	0	15.5	59	37.58%	5	
535331	11	4.5	0	0	15.5	59	37.58%	5	
535548	8.8	6.7	0	0	15.5	59	37.58%	5	
534532	10.3	5	0	0	15.3	62	39.49%	4	

535239	12.8	2.5	0	0	15.3	62	39.49%	5
535969	15.3	0	0	0	15.3	62	39.49%	6
535516	11.7	3.5	0	0	15.2	65	41.40%	6
535482	7.3	7.9	0	0	15.2	65	41.40%	4
535540	10.6	4.5	0	0	15.1	67	42.68%	5
535528	15	0	0	0	15	68	43.31%	4
535521	7.6	7.4	0	0	15	68	43.31%	5
535219	8	6.9	0	0	14.9	70	44.59%	5
535670	10.9	4	0	0	14.9	70	44.59%	5
535498	9.7	5.2	0	0	14.9	72	45.86%	5
535358	8.8	6	0	0	14.8	73	46.50%	5
535991	10.3	4.5	0	0	14.8	73	46.50%	4
535255	9.7	5	0	0	14.7	75	47.77%	5
535857	13.5	1	0	0	14.5	76	48.41%	5
535525	7.7	6.7	0	0	14.4	77	49.04%	4
535584	9.2	5.2	0	0	14.4	78	49.68%	4
535307	12.3	2	0	0	14.3	79	50.32%	6
535659	11.3	3	0	0	14.3	79	50.32%	6
535340	11.2	3	0	0	14.2	81	51.59%	4
535613	13.7	0.5	0	0	14.2	81	51.59%	4
535464	10.5	3.5	0	0	14	83	52.87%	5
535840	6.7	7.2	0	0	13.9	84	53.50%	6
535516	9.3	4.5	0	0	13.8	85	54.14%	6
536054	9.8	4	0	0	13.8	85	54.14%	4
536144	10.7	3	0	0	13.7	87	55.41%	5
535642	10.5	3	0	0	13.5	88	56.05%	4
535662	10.2	3.2	0	0	13.4	89	56.69%	5
535462	7.6	5.7	0	0	13.3	90	57.32%	4
535577	11.8	1.5	0	0	13.3	90	57.32%	5
535302	8.6	4.7	0	0	13.3	90	57.32%	6
534964	12.2	1	0	0	13.2	93	59.24%	4
535294	13.2	0	0	0	13.2	93	59.24%	4
535514	9.7	3.5	0	0	13.2	93	59.24%	4
536093	10.6	2.5	0	0	13.1	96	61.15%	6
535805	7.8	5.2	0	0	13	97	61.78%	5
535465	10.9	2	0	0	12.9	98	62.42%	4
535469	11.3	1.5	0	0	12.8	99	63.06%	4
535647	9.3	3.5	0	0	12.8	99	63.06%	4
536014	11.8	1	0	0	12.8	99	63.06%	6
535183	9.5	3.2	0	0	12.7	102	64.97%	4
535467	10.7	2	0	0	12.7	102	64.97%	5
535348	9.5	2.9	0	0	12.4	104	66.24%	4
535337	12.3	0	0	0	12.3	105	66.88%	4
535453	11.3	1	0	0	12.3	105	66.88%	5
535329	8.6	3.5	0	0	12.1	107	68.15%	4
535368	10.6	1.5	0	0	12.1	107	68.15%	5
536402	8.5	3.5	0	0	12	109	69.43%	3
535295	6.4	5.5	0	0	11.9	110	70.06%	4
535460	9.8	2	0	0	11.8	111	70.70%	4
535735	9.8	2	0	0	11.8	111	70.70%	4
535333	5.7	6	0	0	11.7	113	71.97%	3
535325	11.5	0	0	0	11.5	114	72.61%	6
536367	11.5	0	0	0	11.5	114	72.61%	5
535594	8.9	2.5	0	0	11.4	116	73.89%	5
534775	8.3	3	0	0	11.3	117	74.52%	4
535215	6.1	5.2	0	0	11.3	117	74.52%	5
535819	11.3	0	0	0	11.3	117	74.52%	5
535951	5.1	6.2	0	0	11.3	117	74.52%	4
535356	6.1	5.2	0	0	11.3	117	74.52%	5
535954	8.8	2.5	0	0	11.3	117	74.52%	4
535252	8.6	2.5	0	0	11.1	123	78.34%	3
536096	7.1	4	0	0	11.1	123	78.34%	6
535558	6.1	5	0	0	11.1	123	78.34%	3
536408	6.1	5	0	0	11.1	123	78.34%	5
535319	5.9	5	0	0	10.9	127	80.89%	4

535470	10.8	0	0	0	10.8	128	81.53%	5
535488	7.3	3.5	0	0	10.8	128	81.53%	4
535864	10.8	0	0	0	10.8	128	81.53%	4
535994	10.8	0	0	0	10.8	128	81.53%	5
536184	10.8	0	0	0	10.8	128	81.53%	6
535161	10.7	0	0	0	10.7	133	84.71%	4
535379	7.2	3.5	0	0	10.7	133	84.71%	3
535174	7.1	3.5	0	0	10.6	135	85.99%	4
535218	10.6	0	0	0	10.6	135	85.99%	6
535357	10	0.5	0	0	10.5	137	87.26%	4
535375	9.9	0	0	0	9.9	138	87.90%	4
535327	9.3	0.5	0	0	9.8	139	88.54%	4
535133	7.7	2	0	0	9.7	140	89.17%	3
535269	7.7	2	0	0	9.7	140	89.17%	5
536283	5.6	4	0	0	9.6	142	90.45%	3
535244	8.2	1.2	0	0	9.4	143	91.08%	4
535223	9.3	0	0	0	9.3	144	91.72%	6
536141	9.3	0	0	0	9.3	144	91.72%	4
535506	8.5	0	0	0	8.5	146	92.99%	5
536170	8.5	0	0	0	8.5	146	92.99%	4
536114	7.3	1	0	0	8.3	148	94.27%	3
535742	7.6	0	0	0	7.6	149	94.90%	4
535349	7.5	0	0	0	7.5	150	95.54%	4
535974	3.8	3.5	0	0	7.3	151	96.18%	3
535568	6.5	0.5	0	0	7	152	96.82%	4
535293	3.1	3.5	0	0	6.6	153	97.45%	3
535661	6.5	0	0	0	6.5	154	98.09%	4
535478	4.2	2	0	0	6.2	155	98.73%	4
536008	4.4	1	0	0	5.4	156	99.36%	4
534529	2.5	0.7	0	0	3.2	157	100.00%	3

박형준/2월/기초GS/4회/1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진보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단문 문제 2개와 논점이 명확한 문제 2개가 출제되어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배점이 10점으로 다소 크나, 기본적인 단문 문제이므로 많은 배점의 문제에 대하여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을 암기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채점기준표에는 없더라도 옳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판례와 사안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쓴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설문 1에서 설문 2에 해당하는 판례를 작성하고, 설문2에서 같은 판례를 중복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모든 설문을 먼저 읽으신 후 각 설문에 작성할 판례를 생각해놓은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3) 설문 3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결합발명의 진보성 문제입니다.

변경출원, 분할출원 등을 작성한 답안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논점이 아니라 생각하여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합발명의 진보성 논점은 중요 논점이므로 답지에 있는 내용을 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4) 설문 4

상업적 성공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과성’, ‘객관성’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결론을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답안을 채점하며 설문에서 묻는바를 작성하지 않은 답안이 많이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 2에서 甲의 주장의 당부를 물었음에도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는 답안이 많이 보였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설문을 먼저 읽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찾은 다음에 답안 작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설문에서 묻는바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박형준/2월/기초GS/4회/2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신규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이 4개로 비교적 많으므로 시간과 분량 관리에 신경써주셔야 했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신규성 상실사유 목차’를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신규성 상실사유’를 선결 기재한 후에 그에 대한 예시인 공지, 공연 실시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기재한 답안의 인상이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조문 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기본적인 조문 번호는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2) 설문 2

실질적 동일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 작성하셨으나, 내재적 동일을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양 발명의 구성이 상이한 경우 내재적 동일이 논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또한 원칙과 예외에 대해 구분하여 작성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설문 3

판례를 간단하게 작성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본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 만큼 판례를 좀 더 정밀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였던 만큼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에 대해 구분하여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4) 설문 4

친구 乙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 블로그 게재 행위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작성한 답안이 많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답은 맞으나 논리가 틀린 경우 어느 정도 감점하였습니다.

3. 소결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였기에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문을 아예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3월이므로 시간 관리를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1문을 늦어도 45분 안에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5분씩 시간을 줄여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안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 1-1] (특허발명은, 이하 '갑'이라 한다.

I. 설문 - (1)

1. 진보성 의의, 취지 - 法 제29조 제2항
산업발전 및 기술발전의 촉진을 위해,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을 요한다. (주관적 창작성)

2. 진보성 판단 방법
①출원 발명 확정 ②출원 발명의 기술분야 확정
③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파악 ④ 선행 발명 확정
⑤ 대비 (용이성 판단)

3. 출원 발명 확정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발명의 실명을 확정한다.

4.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확정
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②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 면에서 종합하여 개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파악
① 통상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②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6. 선행발명 특정

① 선행발명의 범위와 내용은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② [선행기술 범위]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그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③ [선행기술 내용]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선행문헌에 제시된 경우, 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대비 (용이성 판단)

(1) 진보성 판단방법

출원발명과 주선행발명을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차이 극복의 판단방법

① 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서, ② 이때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 ③ 뿐만 아니라, 1) 선행문헌에

제시된 암시, 동기, iii) 역교시, iv)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v)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 vi) 이러한 고려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며, vii)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II. 설문-(2) 3

1. 기술분야 고려 위반(주1)

(1) 원칙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그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2) 예외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i)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ii)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iii)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1) 원칙

선행발명1과 출원발명1의 기술분야가 다르다면, 선행발명1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예외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i)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ii)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므로, 甲의 주장은 부당하다.

5.5

III. 설문 -(3)

1. 발명 X의 성질

발명 X의 구성 A, B, C는 각각의 선행발명으로서 공지되었으므로 발명 X는 결합발명이다.

2.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식

(1) 진보성 판단대상

①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②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용이성 판단방법

①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며, ②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③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선행문헌 결합요건

① 여러 인용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②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③ 여러 선행발명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1) 제1주장 - 전제

구성 각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고려해볼 수 있다.

(2) 제2주장 - 결합요건 관련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A, B, C를 결합할 암시, 동기 등이 없다는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제3주장 - 유기적 결합 관련

① 출원발명의 결합관계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② 출원발명의 구성들은 각각 본래 선행문헌들에서 알려진 각각의 기능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여, ③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④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제4주장 - 사후적 고찰 관련

결과적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이라는 주장을 고려해볼수 있다.

2.7

IV. 설문 - (4)

1. 이차적 고려요소 - 취지

(1) 상업적 성공은 단정불가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2) 일차적 고려요소

진보성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 보충적 상황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기술보다 향상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검토

이사건 조미요소는 비 기술적인 요소이므로 기술적 요소에 한정된다면, 이를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기 위한 당업자의 사고로 창작하여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타당하다.

[끝]

[문제 -2]

I. 설문 -(1)

1. 신규성의 의의, 취지 - 法 제29조 제1항

특허는 종래의 테크인바,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신규성 상실사유 - 法 제29조 제1항 각호

(1) 공지 - 의의

①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②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2) 공연실시 - 判例)

①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②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 判例)

1) 반포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간행물

인쇄, 기타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인쇄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3) 게재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 - 심사기준

1) 전기통신회선 - 의의

전자기적 방식의 정보송수신 방법을 말한다.

2) 공중이 이용가능

불특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1

Ⅱ. 설문-(2)

1. 동일성 판단방법 [新規]

(1) 동일의 의미

신규성 판단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어구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방법

신규성 판단시 발명의 동일성은,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3) 내재적 동일

양 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들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다.

(4) 실질적 동일

양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1) 원칙

출원발명 X의 구성 C와 선행발명 1의 구성 C'은 다르므로 양 발명은 달라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절이유는 부당하다.

(2) 예외

하지만, 본원 구성 C와 구성 C'이 ①양 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들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거나, ② 양 발명의 구성 C와 구성 C'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 볼 수 있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거절이유는 타당하다.

1.5

III. 설문-(가)

1.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 (判例)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개씩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뉘어 있어서는 안된다.

2.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서 선행발명 1(A+B) 및 선행발명 2(C)

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 기준 단일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4

IV. 설문 (4)

1.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한다.

2. 외부 촬영 사진 '판례'

당해 간행물은 오직 인용발명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 그 형상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발명과 인용발명을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발명은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사안의 경우

① 乙이 인터넷 블로그에 리모컨 외부 X가 내장된 리모컨의 외부 촬영 사진을 ~~[illegible]~~ 올렸다 하더라도 그 외부 촬영 사진만으로는 내부에 있는 리모컨 회로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② 乙이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바 없다.

4. 결론.

위 조건 모두 X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문제-1]

I 설문(1)

1. 진보성

(1) 의의 (특허 29조 1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2) 취지 취지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이 있는 기술일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인 경우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진보성 판단의 전제 취지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진보성 판단방법

(1) 취지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하고,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및 선행발명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주선행발명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런 점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 경우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출원 발명의 확정

① 관련규정 (法 42조 4항 본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判例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 判例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확정

(4)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파악

(5) 선행발명 확정

(6) 대비

① 차이극복의 판단 방법 判例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선행발명의 결합 가부 判例 (계속)

3

Ⅱ. 설문(2)

1. (발명X)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확정 判例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선행발명1 (A+B+C')의 확정

(1) 기술분야 관련 判例

① 法 29조 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출원발명과 비교대상 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그 비교대상 발명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② 예외적으로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 사안

발명 X 와 선행기술1 기술분야가 달라 선행기술1의 선행기술 지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A+B+C' 에서 A+B+C를 포함하는 발명 X로의 변경이 발명 X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문제해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구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X와 선행기술1이 다른 기술분야임과 동시에 구성의 곤란성에 있는 경우 선행발명1에 의해 발명 X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III. 설문(3)

4.5

1. 용이성 판단방법

(1) 차이극복의 판단방법 判例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나아가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결합 발명의 진보성

(1) 결합발명

2이상의 구성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한다 (광의의 결합발명)

(2) 진보성 판단대상 判例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기술적 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선행발명 조합 가부 判例 (적극)

선행문헌을 3개 이상 결합하는 경우에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4) 주선행발명 선택 判例

①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발명을 선택하고 ② 출원발명과 주선행발명을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③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5) 용이성 판단기준 判例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각각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되며,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선행 발명의 결합요건. 判例

여러 인용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의 출원당시의 제반사정. 즉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러 선행 발명을 부정할 수 있다.

(7) 상승효과 判例

공지기술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도 그 작용효과가 공지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3. 가능한 甲의 주장

(1) 구성의 곤란성.

각각의 선행발명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의 결합이 선행문헌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발명X의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현저한 효과.

공지기술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도 발명X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할 수 있다

(3) 상이한 과제 해결

출원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선행발명과 다르고, 출원발명 각각의 과제이 선행발명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4) 선행기술 적격 부재.

선행발명과 발명 X의 기술분야가 달라 선행기술 적격이 부정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IV. 설문(4) 2.8

1. 용이성 판단 中 이차적 고려요소 체계

(1)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일차적 고려요소

진보성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구성, 목적,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보충적 성격.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보다 항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기술적 인과성 요구. 체계

상업적 성공에는 발명의 기술성 외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발명의 기술성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이 인정되어야 진보성 인정의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 가능하다.

2. 결론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목적, 효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진보성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비기술적 요소인 상업적 성공이 기술적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진보성 긍정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인용될 수 있다.

[문제1-2]

I. 설문(1)

1. 신규성 상실이유 : 法 29조 1항 각호.

2. (협의의 공지) 法 29조 1항 1호 전단.

(1) 공지 判例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2) 불특정다수인.

① 일반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②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③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3) 비밀유지 의무 判例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공지를 부인하는 자가 주장해야 한다.

3 공연실시 法 29조 제1항 1호 후단

(1) '공연실시' 의의 判例

①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②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4.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 法 29조 1항 2호 전단

(1) 반포 判例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간행물 判例

인쇄 기타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3) 게재 判例

① 진보성 판단의 대비발명이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5.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 (法 29조 1항 2호 후단)

(1) 심사기준 :

전자기재 방식의 정보수신 방법에 따라 불특정인이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Ⅱ. 설문(2)

1. 신규성 의의 法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동일성 판단방법

(1) '동일'의 의의 判例

신규성 판단 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방법 判例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일의 태양

① 문언적 동일 ② 실시예가 동일한 내재적 동일 ③ 실질적 동일 이 있다.

(4) 사안

甲의 21일자 출원 X(A+B+C)와 선행발명1(A+B+C) 문언적 동일, 내재적 동일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동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 실질적 동일 여부 - 발명의 구성 일부가 다른경우.

(1) 원칙적으로 구성이 다른 경우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경우 해당 거절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2) 본원 발명X(A+B+C)와 선행발명1(A+B+C')과의 차이가

① 협의의 동일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② 광의의 동일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성 부정의 거절이유 주장은 타당하다.

1.5

III. 설문(가)

1. 신규성 판단 中 [illegible]

(1) 동일성 판단방법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두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2)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 위배 - 선행발명 조합 불가.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다나와있어야 하고,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있어서는 아니된다.

2. 사안

두 선행발명 중 어떠한 선행발명도 청구항 X(A+B+C)의 모든 구성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선행기술 판단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거절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2.6

IV. 설문(4)

1.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공지 시점 判例

(1) 신규성 상실시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제3자가 발명을 공지시킨 경우, 그 시점부터 신규성을 상실한다.

(2) 공지의 성격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보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성이 있다.

2. 선행발명 適格의 요건

(1) 개시요건과 용이실시요건

① 개시요건은 발명의 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며

② 용이실시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 개념이다.

(4) 학설

① 형식적 공지설로 개시요건만 요구된다는 견해, ② 실질적 공지설로, 개시요건 및 용이실시요건이 요구된다는 견해 ③ 절충설 등이 있다.

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中 외부촬영 사진 判例

당해 간행물에 인용발명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내부구성, 용도, 작용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발명과 인용발명의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발명은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단정할 수 없다.

4. 사안

(1) 친구B의 비밀유지의무 있는 사로 친구B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하지 않아

친구C이 안 것은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친구C의 게재

친구C이 게재한 사진은 리모컨의 외부 촬영 사진으로 출원발명은 기술사상의 핵심인 내부회로가 공지되지 않았고, 관련된 작용효과 등에 대한 기재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끝]

[이하 여백]

윌비스 변리사학원 1544-3383 patent.willbes.net